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9 | 2025.12.01 (2025.11.24~2025.11.3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❶차세대 태양광, ❷차세대 전력망, ❸해상풍력, ❹HVDC, ❺그린수소, ❻SMR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를 신설하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23인)」,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회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20인)**」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해운법」 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기재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0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23인).....15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15
-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1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9인)18
-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18
-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20인)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2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2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	2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2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	23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	24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	25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	25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	26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	26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27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7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김정호의원 · 서왕진의원 · 정혜경의원 등 31인)	28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8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30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	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3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3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	3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소송]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기업지배구조] 3차 개정상법, 자사주 전략 재정비의 골든타임
- [공정거래]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12. - 2025. 11. 25.)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초혁신경제, 1차 및 2차 이어 3차 추진계획 발표 - ①차세대 태양광, ②차세대 전력망, ③해상풍력, ④HVDC, ⑤그린수소, ⑥SMR 추진계획을 통해 기후위기·기술패권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강화 -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통해 골든타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지원	2025-11-26
---------	--	------------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①차세대 태양광, ②차세대 전력망, ③해상풍력, ④HVDC, ⑤그린수소, ⑥SMR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하였음

- ①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는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태양광유리 포함)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
-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 마련도 병행
 - 향후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텐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함
- ※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초고효율 텐덤셀 상용화 기술개발(336억원)

- ②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한 발전기 시장 재편(소수·대형→다수·소형)에 대응하여 유연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
- ▶AI 활용 분산자원 관리, ▶입지별(농공산단, 대학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 등)을 추진
 - ▶전남, 제주, 부산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
- ※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AI 활용 ESS 구축지원(1,176억원),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총 702억원), AI 분산전력망 브릿지 핵심기술개발(34억원) 등

- ③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에서는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
-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단가절감, ▶부유식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상풍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함
 -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의 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급증하는 우수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할 계획
- * 풍력발전 유형별 연평균증가율 전망(25~30년): (육상풍력) 6.6%, (해상풍력) 27%
- ※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풍력, 698억원)

- ④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로,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양성을 통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2030년까지 차질없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새만금-서화성)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직류→교류, 교류→직류 변환에 사용하는 특수 변압기로, (+), (-) 양방향으로 전력을 전송하여, 단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 안정성 등의 장점 보유

※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500kV급전압형HVDC변환용변압기기술개발(120억원)

- ⑤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음

-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최대 100MW급, ~'33년)을 통해 경제성과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

※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5MW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100억원), 계통분리형 수소 마이크로그리드 운영기술 개발(75억원) 등

- ⑥ 한국형 SMR 개발은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 세계적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원전 전주기 공급망 기술을 기반으로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를 '28년까지 획득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

- 산업·운송 분야 활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수요에 대비

-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도 구축하여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마련

※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i-SMR 기술개발사업(총 641억원), 민간합작 선진원자로(SFR) 수출 기반 구축사업(70억),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102억원) 등

관계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추진

2025-11-26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22)」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힘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하여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 비전 하에 「자율주행차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함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함.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와 함께, 교통취약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함.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핵심인 주행데이터 축적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일상 속 자율주행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기업들의 실증과 R&D에 애로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를 합리화함.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질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촬영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차량을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익명·가명처리 후 활용을 추진함.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게만 허용 중인 임시운행허가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자체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등 실증환경 여건을 다방면에서 개선함

자율주행 차량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를 지원함. 범부처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GPU를 확보하고 AI 학습센터를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 최근 업계에서 부상 중인 E2E(End-to-End) 기술과 관련해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개발, 협력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해외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내기업에 권리가 귀속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등 R&D 기반을 개선해 나갈 예정임

끝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선제 정비함. 기존의 운전자를 대체하는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는 등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정립하고, 차량 사고시 민사상 책임 소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고책임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함. 아울러, 연내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하여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8 시행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8 시행
-------	-------------------	---------------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8 시행
-----------	--------------------	---------------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개발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959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금의 융자 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액과 자금의 융자 지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이 차이 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 또는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7 시행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하여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보증 내용을 정하고, 실손의료공제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며,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8 시행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20978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절차,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며,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시 최대 출자자에 대한 확인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8 시행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977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 및 보고 사항,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의 운영,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및 조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1-25 시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요건 중 자기자본 기준 등을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각각 총자산의 일부를 국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외화증권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집중예탁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2-10 시행 예정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과 그 관련 기업의 범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25. ~2026.01.05.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3제3항)
 -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게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5 제5항)
 -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게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③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안 제14조의11제3항 신설)
 -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기준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mailto:고용노동부_노사관계법제과) (전화: 044-202-7615, 팩스: 044-202-8076)

기후에너지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25. ~2026.01.07.
----------	----------------------	-----------------------------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 시행과 원활한 정착을 위한 위탁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7511, 팩스: 044-201-6765\)](tel:044-201-7511)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26.
~2026.01.0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던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간 거래 의사가 있었음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tel:044-201-3390)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1.27
~2026.01.06.

20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주요 내용은

- ①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 (안 별표1 제1호 개정)
 -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②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 (안 별표1 제2호 개정)
 -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 문의처 :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전화: 02-2100-2678, 팩스: 02-2100-2678\)](tel:02-2100-267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23인)

2025-11-25 발의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① 자기주식의 소각의무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안 제341조의4 제1항)
-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1조의4제2항)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관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341조의4제3항)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내용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안 제635조제3항제9호 · 제10호)

②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 · 처분 방법

- 자기주식 소각의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게 그 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함 (안 제342조제1항)
-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 (안 제342조제2항 · 제3항)
-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함 (안 제342조제4항)

③ 기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되, 소각의무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함 (안 부칙 제2조 등)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2인)

2025-11-26 발의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보관하던 법률자문 의견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을 검찰이 광범위하게 압수한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고, 해당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변호사 비밀유지권 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임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와 의뢰인이 그 의뢰 사건과 관련해 공범관계가 소명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 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안 제26조의2 및 제113조제3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11-24 발의

2009년 비트코인의 출시 이후, 디지털자산시장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엄연한 대체투자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은 Web 3.0 시대를 맞아 탈중앙화된 새로운 경제·금융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디지털자산은 초국경적·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및 산업은 도태될 수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제도 마련은 통화 주권, 국채 등의 국가전략적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경향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방지 또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라는 규제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등 금지, 법인 가상자산 제한 등 그림자 규제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집합투자기구(‘비트코인 현물 ETF’)의 금지 등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될 경우, 전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금융이 ‘갈라파고스’화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을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산업·이용자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① 디지털자산 시장의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ETF와 파생상품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칙 등을 마련하며, ②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진입규제로서 각 유형에 대한 인가·등록제를 마련하는 등 체계를 갖추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정비하며, ③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측면에서 전문 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구분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며, ④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준비자산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자산시장의 선진화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025-11-25 발의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은행 대출금 월중 평균가액의 0.06%에 불과하여, 은행권의 예대마진 등 막대한 이익규모에 비해 서민금융에 대한 기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은행권에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는 관행은, 은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은행의 ESG 경영 확대,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현,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큼.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구조로 인해 은행의 추가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연요율 인상에 따른 은행권 부담은 제한적임

이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며, 불법사금융 이용 감소 및 자활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47조)**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2025-11-25 발의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회토티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4항제2호 및 제23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2025-11-27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9인)

2025-11-24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다만, 동 특례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이러한 소득세 감면특례가 사라질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특례연장을 기존에 3년 단위로 하여 소득세 특례 적용에 안정감이 떨어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메리트가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을 연장하되, 기존의 3년이 아닌 6년을 연장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의원 등 12인)

2025-11-25 발의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특히 지난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변경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세제로서의 기능을 크게 상실함

부동산 부유층의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구현,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시정, 주기적 주택 가격 폭등의 방지 등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유지하되 조세저항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보유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임. 또 국민경제의 일반적인 개선을 훨씬 넘어서는 부동산 지대(地代) 수익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토지에 집중할 필요가 매우 큼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토지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기획재정위원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김병기의원 등 20인)

2025-11-26 발의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전략적투자의 의미 등 (안 제2조)

-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를 말함

②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아울러, 전략적투자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③ 한미전략투자공사 (안 제11조부터 제32조까지)

-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함.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④ 한미전략투자기금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함.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조성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11-26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3인)

2025-11-28 발의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5-11-27 발의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 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4항)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5-11-27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3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의원 등 14인)

2025-11-25 발의

최근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26 발의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성폭력·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2025-11-27 발의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 또한 빈번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적이 있음. 게다가 최근 일부 국가기관등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11-25 발의

대한체육회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특정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 후원계약을 체결하며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은 금전후원의 급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음

그러나 공식후원계약 체결 이후 올림픽 등 대회 출전을 위해 국가대표단에게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은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와 별도의 구매계약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에게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개별적인 수의 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자는 현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대한체육회는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등을 통해 후원사들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1조제4항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5-11-25 발의

본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지방분권의 취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 세제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이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일부 사업자는 세제 혜택만 누리며 의무는 외면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법의 미비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법의 미비를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정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또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도 운영을 가능케 함

아울러,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을 하려는 자가 운동시설 이외 고객 편의를 위한 식음료 시설, 목욕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를 통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승인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영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11-24 발의

2018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선사들의 운임 등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컨테이너 정기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남아 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 항로 취항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 항로 취항 선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서울고법은 해운법을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해운사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시킴.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모두 자국의 무역운송 증진을 위해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법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이 같은 조치를 할 경우 해운은 물론이고 우리 무역 수출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과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7항, 제8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2025-11-24 발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주기 규제강화와 함께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임

이러한 플라스틱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이 가능하고, 퇴비화, 자연토양 및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생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제품을 생산 등 산업기반이 형성 중에 있으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술개발 촉진, 재정적·기술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사용 장려, 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 인증제도 운영 등 산업진흥을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2025-11-26 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검증 절차, 기록·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 (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7인)**

2025-11-28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등)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5-11-24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음. 이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만으로, 유례없이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국내 상황 변화와 함께 전세계적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치료기술,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의료정보의 활용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 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이에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025-11-25 발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나타나는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 ‘54-11-5’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도 “니코틴(nicotine)”은 화학물질고유번호가 ‘54-11-5’인 것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 「담배사업법」상 담배에는 인체흡입용으로 소비되며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등이 포함될 수 없음

지난 9월 22일 동 위원회에서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에 따라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인체흡입용 니코틴류가 유해성 검증 없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에 대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유사니코틴류에 대한 유해성 검증방안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부대의견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유사니코틴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유사니코틴의 유해성 검증 필요성을 밝힌 것임

결론적으로 현행법으로는 통상 1톤(30ml 기준 액상 330만병 제조가능) 미만으로 수입되는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관하여 유해성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해서는 종전 2013년 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유해성심사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26 발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오염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0조의2 제1항 및 제76조제1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서왕진의원·정혜경의원 등 31인)

2025-11-26 발의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정책 수립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된 석탄화력발전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시점에 조기 폐쇄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또한,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26 발의

최근 패션 산업의 대량 생산·대량 폐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만 6,000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11만톤까지 약 2배 증가했고, 2023년 기준 11만 3,000톤이 발생하는 등 폐의류의 다량 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

합성섬유 중심의 의류는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수 및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환경적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발생 실태 파악, 순환이용 촉진, 소각·폐기 현황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재고 감축 정책의 설계·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사용·재활용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한계가 있음

반면 유럽연합(EU)은 2025년 9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의류 재고품의 폐기 제한·금지, 재고 관리 의무, 정보 공개 등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류·신발·침구류 등 광범위한 섬유 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의류 증가 대응 및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수입·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6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1항제1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5-11-26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성이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임산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가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장애인을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점자,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27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2025-11-27 발의

최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머물러 있어 악성·반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억지력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고, 청년·비정규직·일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체불 피해가 집중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임금체불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사업주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지렛대로 삼아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7조 및 제10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5-11-28 발의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후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속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작업중지를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 (안 제55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11-24 발의

최근 대형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을 즉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대응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 주민은 공공·민간의 임시주거시설에 분산되어 생활불안, 정신적 충격, 회복지연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건설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는 입주인을 방문한 손님이 잠시 숙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일명 게스트룸(이하 “공용숙박시설”이라 함)이라는 공동이용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음. 해당 공용숙박시설을 평상시에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면서도 재난 발생 시 임시주거시설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대응형 주민공동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용숙박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를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구호권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임시주거시설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11-26 발의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5-11-28 발의

현행법은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계획수립권자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특례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상 특례 대상에는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25.9.7.)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제5항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12/1(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12/3(수) 10:00	- 고유법 심사, 타위법 심사
기재위	경제소위	12/2(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4(목) 14:00	- 법안 의결
농해수위	전체회의	12/1(월) 오후	- 법안 의결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12/1(월) 10:00	- 법안 심사
	교통법안소위	12/4(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월) 09:30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가디언 금융포럼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2/1(월) 14:00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황정아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2(화) 19:00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11차 세미나 에너지플랜트 해 외수출 확대를 위한 법부처 통합 정책지원 방안	송석준·손명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12/2(화) 14:00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산업 대응방안	한민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12/3(수) 14:00	기술패권의 시대, 국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조승래·안철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12/4(목) 10:00	철수설을 넘어 지속가능한 한국지엠 발전방안 마련을 위 한 국회토론회	이용우·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12/5(금) 09:00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김태선·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5(금) 14:00	2025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컨퍼런스	이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5(금) 14:00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 합전략 포럼	이개호·문금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자료집 등	12/1(월)	「Data+ 2025-23호」 통권 제23호 발간	국회도서관	
	1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6호 발간		
	12/3(수)	「금주의 서평」 제756호(2025-47호) 발간		
	12/3(수)	「Data&Law」 제38호(2025-1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24(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2호(2025-22호)	국회도서관	
	11/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5호(2025-22호)		
	11/26(수)	「금주의 서평」 제755호(2025-46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25(화)	소송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 위반을 이유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1/26(수)	기업지배구조	3차 개정상법, 자사주 전략 재정비의 골든타임
11/28(금)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11/28(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1. 12. - 2025. 11. 25.)
11/28(금)	공정거래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